

제공일자	2015. 2. 24(화)	담당자	김해식 연구위원, 조재린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41
			총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: IFRS와 RBC 연계방안』 보고서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김해식·조재린 연구위원은 “보험회계 기준 개정안(IFRS 4 phase 2)을 활용한 RBC 지급여력평가 시 손실이 예상되는 보유계약이 상당하고 할인율 급락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여 RBC 강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”고 주장
-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가 회계제도의 변경이나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RBC 가용자본 항목에 장래손실과 더불어 장래이익을 포함하고, 보험부채 할인율에 대한 감독조정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

☐ 보험연구원은 “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: IFRS와 RBC 연계방안”이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음.

- 2014년 9월 개최한 동명의 정책세미나 「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: IFRS와 RBC 연계방안」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안의 구체적인 논거와 사례를 보완하여 정책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음.

가용자본에 장래이익도 포함할 것을 제안

☐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알 수 있음.

- 그런데 IFRS 4 phase 2는 장래손실을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도록 하지만, 장래이익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손익을 구별하고 있음.
- 이때, IFRS 회계정보를 그대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장래손실보다 크더라도 상당수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.

□ 장래손실과 장래이익 모두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손익이므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**IFRS와 같이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크지 않음.**

- 보험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장래이익은 물론 장래손실의 발생 가능성 역시 소멸됨.
- 그럼에도 장래손실만을 반영한 IFRS 회계정보에 기초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할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음.
- 물론 향후 이익이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중도해지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래이익이 장래손실을 보전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.

□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시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함.

- 이때, 중도해지 급증에 따른 유동성위험 모니터링을 전제로 지급여력평가에서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.
-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있는 해외사례(예: Solvency II, 영국, 호주 등)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,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하고 있음.

RBC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수단 필요

-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을 제안
 - 현재 IFRS 4 phase 2의 할인율 적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할인율 급락에 따른 준비금 급증과 RBC비율 급락이라는 경기순응성을 피하기 어려움.
 -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.

<별첨> 정책보고서 『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: IFRS와 RBC 연계방안』
1부. 끝.